

제 1162 호
1985. 8. 26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업무팀
편집인 : 공보관리과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 례

- ◎ 고 시
 - 제 560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변경허가 (제 4 차) 2
 - 제 561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2
- ◎ 공 고
 - 제 491 호 : 도시계획사업 학교시행허가에 따른서류공람공고 3
 - 제 492 호 : 주택개발재개발시행인가폐지를 위한공람공고 3
- ◎ 구청공고
 - 동대문구제 40 호 : 동장직인 및 체인개각공고 4

공 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60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
변경허가 (제 4 차)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92(84.8.24) 호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 변경허가 (제 3 차) 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19 번지 일대에 대하여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변경허가 (제 4 차)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8.26

서울특별시 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19 번지 일대
-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
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, 경동시장 신축공사
- 다. 사업의면적 및 규모
변경사항 없음.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

주소 : 변경사항 없음.

성명 : 대표이사

당초 : 이 범 상

변경 : 이 상 계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
○ 착수년월일 : 81.9.5

○ 준공예정년월일

당초) 85. 5.31

변경) 86. 5.31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변경사항 없음.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변경사항 없음.

○ 허가설계도서 (변경) : 따로붙임 (변동사항없음 : 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61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550 호 (85.8.14) 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8.26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조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(m)	연장(m)	시점	종점	비고
기정	대로	3	24	25	725	신대방동 351-5	신대방동 395-7	전구간 복원추소
변경	중로	3	174	12	725	"	"	
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 도면: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91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에
따른서류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계동 411-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을 시행허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청취한다.
2. 관계도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본 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한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986.8.26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)
나. 사업개요
 대지면적: 3,402㎡
 기 존: 1,593.95㎡(3층)
 증 축: 464.40㎡(4층)
다. 사업기간: 85.9 ~ 86.9.30(예정)
라. 기타 설계도서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92 호

주택개량재개발시행인가
폐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전설부고시 제 470 호(73.12.1)로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103 호(79.3.2) 및 같은고시 제 69 호(77.3.14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사당계 2, 사당계 4, 봉선계 3 구역과 전설부고시 제 184 호(75.11.13)로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0 호(79.8.28)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미아계 5 구역에 대하여,
2. 당초인가된 실시계획 내용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구역에

대한 시행인가를 폐지하고자 도시 재개발법 제 30 조 같은법 제 3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 공고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공고 내

가. 시행인가 폐지내용

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안에 관할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85.8.27
서울특별시장

사업명칭	시행구역	면적		주된사무소 소재지	시행기간	시행인가년월일	시행자성명
		당초인가	시행폐지				
사당제 2 구역	동작구사당 3 동산 24	149,170	149,170	서울특별시	81.12.31	79.3.2	서울특별시장
사당제 4 구역	동작구사당 2 동산 12	195,231	195,231	"	81.12.31	75.2.8	"
봉천제 3 구역	관악구봉천 5 동산 101	180,255	180,255	"	81.12.31	75.2.8	"
미아제 5 구역	도봉구미아 6 동 1261	399,046	393,089	"	81.12.31	79.8.28	"

나. 시행인가 폐지사유

당초 서울시를 시행자로 한 주민자력개발을 위해 시행인가 되었으나 지역여건상 시행완료 되지 못하고, 그 기간이 종료되었으며, 현재 폐지대상지역의 시행방법등이 지역주민에 의거 검토되고 있어 향후 동시행에 부합된 사업내용으로 인가코자 폐지하는 것임.

다. 공람기간 : 85.8.28-85.9.27(30일간)







구 청 공 고

◎동대문구공고제 40 호

직 인 개 각 공 고

서울특별시 동인규칙 제 2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 직인 및 제인을 개각하였기에 동 제 6 조에 의거 공람한다.

1985.8.26
동대문구청장

<p>1. 직인명 이문계 2 동장인 2. 사용개시 및 폐인일자 1985년 9월 1일 3. 인 영</p>		<p>◎ 동대문구공고제 40 호 직인개각공고 서울특별시 동인규칙 제 2 조 제 3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적인 및 계인을 개각하였기에 동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. 1985.8.26 동대문구청장</p>	
인 영			<p>1. 직인명 중화계 2 동장의 인 및 계인 2. 사용개시 및 구인 폐인일자 1985년 9월 1일</p>
공 표 인 영	이문계 2 동장 직인 (개각)	이문계 2 동장 직인 (폐기인)	
3. 인 영			
인 영			
공 표 인 영	중화계 2 동장인 (개각)	중화계 2 동장인 (개각)	중화계 2 동장인 (폐기인)
			
			중화계 2 동장인 (폐기인)